

붙임 2

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

〈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〉

가. 저소득층 : 가구원(주민등록세대원)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*가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(단,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) ※ '노인장기요양보험료'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

※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“가구원 수” 및 “건강보험료 부과액”은 **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**

- ”가구원 수“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, ”건강보험료 부과액“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- 다만, **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**,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*하도록 하고,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(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)

*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

(예시)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

❖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(이름·주민번호)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“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”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

· 그러나 **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,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**,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

※ **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**
: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,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,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→ 일모아시스템에서 “이의신청” 버튼을 클릭하여,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

※ **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,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“가구원수”(주민등록세대원)에는 포함**



※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

- “가구원수”에 따라, 해당 “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”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, 기준 중위소득 65%(1인가구는 120%) 이하로 판단
(예시) 2인 가구, 직장가입자의 경우 :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,44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→ 저소득층 해당

〈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〉

(’22년 기준, 단위: 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*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**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334,000	82,112	36,122	
2인	2,119,000	74,447	23,682	75,079
10인	6,761,000	240,332	263,638	244,759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

* 가구원수 1인 : 기준 중위소득 120%, 가구원수 2인 이상 : 기준 중위소득 65% 해당 금액

*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

나. 장애인 :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(『장애인복지법』 제2조제1항)

❖ (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)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

다.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: 공공 취업알선기관(고용센터,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)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

- 청년(만 15세~만 34세)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,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,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

*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

❖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·제공되나,

①워크넷(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)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,

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**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

* 고용센터, 장애인고용공단, 여성새로일하기센터,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

**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

라. 결혼이민자 :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『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』 제2조제3호)

- ❖ (국적 취득 전) 외국인등록증의 F2, F5,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
- ❖ (국적 취득 후)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

마. 여성가장 : ①미혼여성이거나, ②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

- * ①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
-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
- ③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제출서류

구 분	첨 부 서 류	
공통사항	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	
선택사항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 확정판결문
	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



바. 성매매피해자 : 『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

- ❖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

사.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(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)

- ❖ (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) 한부모가족 증명서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)를 제출받아 확인

아. 북한이탈주민 :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북한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(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)

- ❖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

자. 위기청소년 :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,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,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(6개월 이내 만기 퇴소)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, ④15~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·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

- ❖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,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,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

차. 갱생보호대상자

- ❖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

카.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

- ❖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

타. 노숙인 :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(『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항)

- ❖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

파. ('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)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 :

-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,
- ②(사실상) 폐업·휴업한 자영업자,
- ③ 소득이 급감한 특고·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
(’20.2.23., 코로나19 위기 경보 “심각 단계” 발령 이후에 한함)

〈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〉

- ① **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**
 - 실직자 : '20.2.23.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
 - *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·취득일 확인 가능(단,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,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)
 - 무급휴직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 : '20.2.23.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·휴직 상태인 자(단,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)
 - ※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【붙임10】 참조
- ② **(사실상) 폐업·휴업한 자영업자** : '20.2.23. 이후 폐업·휴업하였으며,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
 - 폐업여부 :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
 - 휴업여부 :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
 - 국세청에 휴·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'20.2.23. 이후 사실상 휴·폐업하였음을 증빙*
 - * 사실상 휴·폐업인정기준, 업종제한여부(소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),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·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
(매출액 증빙서류 예시: 소득금액증명원, 과세표준증명원 등)
- ③ **특고·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** :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'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(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)
 - * 단, 소득 '급감'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
(예 :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)
 - ※ 신고,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·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



〈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(수행기관 담당자)〉

① (무급휴직자 정의) '20.2.23. 이후부터 사업 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

② (참여대상) ‘무급휴직지원금’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

- 다만,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

※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(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21조의3)(붙임10)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(무급휴업·휴직)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(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 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)

③ (증빙서류) 재직증명서, 무급휴직확인서(사업장용, 신청자용 각각) (붙임11)

* 재직증명서의 경우,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서식 활용

④ (업무처리절차)

A. 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

B.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

C-1. (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) 참여신청 불가 안내

* 다만,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,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

❖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

-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므로,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
-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, 고용보험 법령 등에 의거,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·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

C-2. (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)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 참여 여부 결정